별첨1 인사규정 제10조

□ 인사규정 제10조 채용 결격사유

- ㅇ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, 특정후견심판, 임의후견심판이 확정된 자
-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
-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ㅇ 징계 면직된 자
-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복권되지 아니한 자
- ㅇ 병역의무자로서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- ㅇ 이력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
- ㅇ 수습기간 중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ㅇ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